

# 정 정 신 고 (보 고)

2015년 7월 16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4월 27일
3. 정정사항

## 가. 종류 C-P(연금저축) 및 종류S-P(연금저축) 수익증권 신설

항목	정정전	정정후		
		종류 (클래스)	종류C-P (연금저축)	종류S-P (연금저축)
제1부 및 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-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(신 설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B5599	B5600
		종류 C-P(연금저축) 및 종류S-P(연금저축) 수익증권 신설		
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(신 설)	종류 C-P(연금저축) 및 종류S-P(연금저축) 내용 추가		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	(신 설)	종류	가입자격	
		종류 C-P (연금저축)	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“ 연금저축 계좌 ” 의 가입자	
		종류 S-P (연금저축)	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 제 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 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소득세법 제 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“ 연금저축계좌” 의 가입자	
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			종류 C-P	종류 S-P

항목	정정전	정정후		
		구 분	(연금저축)	(연금저축)
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	(신 설)	환매수수료	-	-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(신 설)	종류 C-P(연금저축) 및 종류S-P(연금저축) 내용 추가		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(4) 종류C-P(연금저축), S-P(연금저축) 수익증권 수익자(연금저축계좌 가입자)에 대한 과세	(신 설)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추가		

#### 나.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
- 1)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 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    -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- 2)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  1. 재무정보
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

#### 다. 작성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내용의 갱신

	변경전	변경후
작성기준일	-	2015년 6월 30일

- 1)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  5. 운용전문인력
- 2)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 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
- 3)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 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    -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

라. 운용자산 규모

4) 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

라.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변경내용 및 FATCA 시행내용 반영

1) 제5부.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